

# 마셜 제도의 법인 소재지 재등록 절차

## 법인 소재지를 다른 사법관할권으로 재등록하는 이유는?

선주 또는 선박운항회사 (심지어는 회사 그룹 전체)가 법인 소재지를 회사 설립을 등록했던 원래의 사법관할권으로부터 다른 사법관할권으로 옮기는 소재지 재등록 (즉 "이전")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이때 자회사 자격의 특수목적기구 (SPV) 모두를 새 사법관할권으로 옮기기도 함). 이러한 소재지 재등록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회사 지역 본부의 타 지역 이전이나, 기국 (旗國) 선택을 포함한 세법상 효율적인 전략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혹은 이 두 가지의 복합적 이유에서 소재지 이전이 필요하되, 선주 / 선박운항회사가 기업의 연혁 및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본고는 법인 소재지를 타지에서 마셜 제도 공화국 (이하 "마셜 제도")으로, 또는 마셜 제도에서 타지로 재등록하는 절차를 간략히 소개한다.

## 마셜 제도로의 (또는 마셜 제도에서 타지로의) 법인 소재지 재등록

마셜 제도 주식회사법 (Business Corporations Act; **BCA**)<sup>1</sup> 제 15(p)조는, 마셜 제도에 설립된 법인이 "소재지 등록, 소재지 재등록, 법인 국내화 등록, 법인신고, 법인등록을 하는 것을 허용하며, 법인의 초기 또는 후속 등록 상의 주소지 또는 등록사무소, 또는 domicile (영어권 법상의 소재지), siege social (프랑스어권 법상의 소재지), sitz (독일어권 법상의 소재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개념의 소재지를 여하한 타지에서 마셜 제도로 또는 마셜 제도에서

타지로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이 동일 법인으로 존속함"을 허용한다.

법인 소재지를 마셜 제도로의 (또는 마셜 제도에서 타지로) 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마셜 제도 주식회사법 (BCA) 제 14 절 (제 126-129 조)이 규정한다.

## 마셜 제도로의 법인 소재지 이전

해외 사업체를 마셜 제도로 이전하는 절차는 간단하며 그 비용은 현재<sup>2</sup> 면제되고 있다. 마셜 제도 해운 및 법인 관리국 (Maritime & Corporate Administrators, Inc.; 이하 "**MI 등록국**")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소정의 양식대로 작성한 법인 국내화 (domestication) 신청서; (b) 해당 법인의 기존 설립정관 (영문으로 제출); (c) 신규 정관, 즉 마셜 제도 기준에 맞게 작성된 법인 설립정관; (d) 해당 법인이 실존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그리고 (e) 해당 법인의 등록대리인 (registered agent; 이는 항상 마셜 제도의 신탁회사임)의 임명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법인 국내화 신청서에는 여러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설립일, 법인명, 원래 소재지, 사업장, 법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며 선의 (good faith)에 근거한 신청이라는 점 등).

소재지 재등록은 해당 법인이 이미 지고 있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의무는 이월되나, 단 MI 등록국에 등록 가능한 채권은 저당권 담보가 유일함), 해당 법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는 계속하여 보장된다. 법인 국내화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즉 (재등록을 통해)

<sup>1</sup> <https://www.ilo.org/dyn/natlex/docs/ELECTRONIC/87640/100006/F1648745789/MHL87640.pdf>

<sup>2</sup>소재지 재등록 신청 수수료는 US\$500이지만, 2020년 9월 기준 부과를 면제하고 있다.

소재지가 마셜 제도로 변경되는 시점부터, 마셜 제도의 법이 적용된다. 외국 법인이 마셜 제도로 소재지 재등록을 하는 경우, 법인의 사법관할권이 변경될 뿐이며, 신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인명과 법인이 존재해 온 이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단, 소재지 재등록을 마친 법인은 마셜 제도의 협회법 (MI Associations Law)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법 (BC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재지 재등록 신청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중개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중개인의 역할은 변호사, 회계사, 법인업무 대행사, 자격을 갖춘 해운회사 및 그 외의 사람/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Maples Group 홍콩 사무소의 수탁 (fiduciary) 서비스 팀은 MI 등록국에 의해 마셜 제도 소재지 재등록 업무 관련 "승인된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마셜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LP**),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해외 사업체는, 현재 등록된 사법관할권이 타 지역으로의 소재지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마셜 제도로 소재지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유한파트너십 (**LP**)의 경우, 유한파트너십 국내화 증명서 및 유한파트너십 증명서 (총칭하여 "**증명서**")에 대한 사전 승인을 MI 등록국으로부터 받은 후, 해당 해외 법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는 자가 각 증명서를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서류의 명칭한 사본 또한 MI 등록국에 제출 가능함).

상기 증명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서가 요구된다:

- 해당 법인의 현 사법관할권 내 법인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인설립 증명서, 설립정관 또는 기타 문서이되, 유관 행정기관에서 발부해준 인증사본;
- 해당 법인이 현재 실존함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유관 행정기관이 최근 발행한 문서 (기업의 양호상태 인증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등), 또는 유관 행정기관이 이러한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동 사법관할권 내 변호사가 인증한, 해당 타지 법인이 본인이 인지하는 한 현 시점에 합법적으로 존재한다는 확인서.

필요한 모든 문서가 접수되고 MI 등록국이 규정준수 확인을 마칠 경우, 제출 후 영업일 1일 이내에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절차가 완료되면, 제출했던 증명서 중 각 1부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4일 이내) 의뢰사에 반환된다.

### 마셜 제도에서 타지로의 법인 소재지 이전

마셜 제도의 법인이 법인 소재지를 마셜 제도에서 다른 사법관할권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사법관할권이 이전을 허용하는 한, 주식회사법 (BCA) 제 128 조에 따라 법인 소재지 이전증명서 (이하 "**이전증명서**") 발급 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증명서에는 제 128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의 새로운 소재지가 되는 사법관할권
- 문서 전달에 사용될, 해당 법인의 새로운 소재지 내 이름 및 주소
- 소재지 이전 발효일
- 해당 법인의 마셜 제도 내 공식 등록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해당 마셜 제도 법인을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이 있고 신원이 확인된 자가 이전증명서에 서명해야 하고, 서명된 이전증명서 2부를 1 세트로 하여 MI 등록국에 제출해야 한다. 서명이 명징하게 식별될 시,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하다. 서명자 신원확인을 위해: (a)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방법; 또는 (b) 서명자 본인이 주식회사법 (BCA) 제 5 조에 의거,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방법이 있다.

요건대로 준비된 문서는 MI 등록국 지소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처리된다. 문서 처리 후, 제출했던 이전증명서 2부 중 1부는

의뢰사에 (영업일로 며칠 후) 반환된다.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MI 등록국은 마셜 제도 사법관할권 내에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이전증명서를 발급한다.

이전증명서 발급신청 수수료는 US\$500 이다 (이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았음). 마셜 제도 정부, MI 등록국 및/또는 등록대리인에 대한 미납 수수료나 요금이 있는 경우, 이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기 전 납부해야만 소재지 재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전증명서 발급 신청 ("소재지 이전 의향 증명서"로도 지칭)이 MI 등록국에 일단 접수되면, MI 등록국은 (접수일 현재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며 소재지 이전증명서를 발급한다. 의뢰사가 요청하면, Maples Group 은 '기업활동 지속을 위한 소재지 이전' 의견서를 작성해 제공할 수 있다.

## 저자

조나단 실버 (Jonathan Silver)는 Maples Group 홍콩 사무소 소재 Maples and Calder 로펌의 금융 팀 파트너 변호사이다. 본 로펌 아시아 지역 해운법무를 총괄하는 수석 변호사이며, 홍콩 공인 공증인이고, 아울러 홍콩 마셜제도변호사협회 회장이다. 미국, 유럽, 홍콩 및 중국계 은행 / 대선계약주체 / 선주들에게 은행업무, 금융, 선박금융, 선박 리스 금융, 선박 매매 및 해운업 관련 기타 다양한 유형의 상업계약 (신조선계약, 환급보증, 이행보증, 선주들 간의 합작법인 등) 에 관한 법률자문을 15년 이상 제공해 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중국계 은행들과 중국계 대선계약주체들 및 기타 금융리스 회사들이 사용하는 해운 / 선박금융 / 선박 리스 금융의 구조화 등이다. 잉글랜드, 웨일스, 홍콩 (비활동), 아일랜드 (비활동) 및 마셜 제도 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표준중국어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으며, 광둥어도 대화가 가능하다.

## 홍콩

### 조나단 실버

+852 3690 7443

[jonathan.silver@maples.com](mailto:jonathan.silver@maples.com)

### 2021년 5월

#### © MAPLES GROUP

본고는 Maples Group 의 고객 및 업무상 연락이 오가는 전문 담당자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습니다. 본고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